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2018. . .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낙동강 체육공원 내 개장하는 야외 물놀이장의 이용시간을 하절기
일몰시간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운영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이용시간 조정(안 제5조제1항제2호)
 - 제정안 : 9시부터 18시까지
 - 수정안 : 10시부터 19시까지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2호 중 “9시부터 18시까지”를 “10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① 물 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이용시간: <u>9시부터 18시까지</u>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u>10시부터 19시까지</u>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물놀이 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샤워장, 매표소, 야외무대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장 또는 물놀이장 시설의 사무·운영을 위탁받은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물놀이장의 위치는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 614-10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 7월부터 8월까지
2. 이용시간: 10시부터 19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사무·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표 1의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입장료) ① 물놀이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입장료를 이용 당일 현장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입장료 등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입장료 전액 감면

2. 별표 4의 입장료 감면대상: 입장료의 100분의 50 감면

제9조(입장료 반환) ① 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납부한 입장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입장 이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물놀이장 및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한 자는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이용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에 걸리거나 술에 만취한 경우
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2조(보험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세입조치)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4조(수입금 입금) 입장료로 징수한 전일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구미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사무·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제6조 관련)

1.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2. 물놀이장 시설이용 개시 30분 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당일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설치 내·외 지역의 안전위험 요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5. 기계적 장치로 작동되는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 시간 가동 후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6.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한다.
7. 사고발생 시 안전관리요원은 응급조치 후 운영사무실, 관할 병원이나 소방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물놀이장 이용수칙(제6조 관련)

1. 6세 이하의 영아·유아 또는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입수 전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3. 풀장 이용시 반드시 신발을 벗고 이용 바랍니다.
4. 풀장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5. 풀장 주변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6. 다이빙, 물에 빠뜨리기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7. 돌, 소지품 등을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3]

입장료(제7조 관련)

(단위: 원)

대 상 구 분	영아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	비고
입장료	무료	4,000	6,000	
※ 이용자 구분 - 영아 : 2세 이하 - 유아 및 어린이 : 3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및 성인 : 13세 이상				

■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4]

입장료 감면대상(제8조 관련)

1.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구미시 다자녀 가정
 3. 구미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국가보훈대상자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기타대상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비고
 - 가. 입장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별표 3의 입장료에 한하여 50% 감면율을 적용한다.
 - 나.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다.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의 감면, 구미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 추천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라. 그 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